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의안 번호	11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. 10. 11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타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금융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, 사고발생시 행정기관에 일정부분 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재정적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추세이므로
-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을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회피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.
- 따라서 주민등록 관장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업무 수행중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.

2. 주요골자

가.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지정(안 제2조)

-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 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

나. 보험의 가입 및 금액 (안 제3조)

- 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함.

다.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(안 제5조)

- 구청장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함.
-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으로

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주민등록법 제20조

나. 예산편성 : 2005년도 본예산

- 소요 예산액(년간) : 3,842천원(예상) ▶ $78,400원 \times 49명 = 3,842천원$
 - 총무과 1명, 민원봉사과 1명, 각 동 47명 (15개동 \times 3명, 1개동 \times 2명)
- 2005년도 보험가입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) 이 조례에서 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”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지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

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